

도난보험



상품안내

보장내용

가입예시

알아두실 사항

도난보험이란?

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건물 내에 보관중인 동산이나 현금, 유가증권의 보관 또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강도, 절도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보험입니다.

01 이 상품의 주요특징

-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.
-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02 주요 가입대상

-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일정장소 내에 보관중인 동산(현금, 유가증권 포함)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.

● 주요 보상하는 손해

도난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동산이나 현금 및 유가증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불법 침입이나 불법탈취, 절도,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(훼손,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)를 보상합니다.

● 특별약관의 보상내용

-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보상 특별약관
- 보관시설 파손보상 특별약관

● 보상하지 않는 손해

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,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
-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가족, 친족, 피고용인, 동거인, 숙박인,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
- 지진, 분화, 풍수해,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
- 화재,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
- 절도,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
- 상점, 영업소, 창고 또는 작업장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
-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
- 망실 또는 분실 손해
-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
-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
-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
-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
- 자동차, 오토바이, 동.식물에 발생한 손해

● 이용안내

- 상기내용은 **상품설명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**,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**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**을 알려드립니다.

상품안내

보장내용

가입예시

알아두실 사항

● 가입예시

(보험기간:1년)

위험구분	품목	기초수	보상한도	보험료(원)
영업소 내 동산	청량음료, 주류 등	보험가입금액 5천만원	보험가입금액 한도 (비례보상)	6,400
금융기관	현금 및 유가증권	보험가입금액 2억원	보험가입금액 한도 (비례보상)	8,100

TIP

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.

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,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상품안내

보장내용

가입예시

알아두실 사항

● 보험기간

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도 가능합니다.

● 납입방법

보험료는 일시납, 2분납, 4분납이 가능합니다.

●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

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.

- 도난경보장치 및 도난방지시설, 경비상태, 전문경비용역업체의 경비여부 등
- 동산담보 시
 - 보험가입물건의 종류, 수량, 가액, 보관장소의 위치, 구조, 장부위치 여부(상품, 임차품 등 항상 이동, 증감이 있는 물품의 경우) 등
-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 시
 - 옥내 : 통상보관금액, 경비상황, 현금 및 유가증권의 입·출금 장부 작성 등.
 - 옥외 : 통상운송금액, 운송구간, 운송회사, 운반인 및 호위인수 등

●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

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,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[전문금융소비자]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 국은행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제2조(정의)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.

● 품질보증제도

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(도장을 찍음)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,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(사이버몰)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● 설명의무

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● 계약 전 알릴 의무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(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(이하 '계약 전 알릴의무'라 하며, 상법상 '고지의무'와 같습니다)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● 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)

●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,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,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